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게임물 수정 시 사전신고 허용 및 경미사항 신고 면제 >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49호)

2025.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1. 게임물 수정 시 사전신고 허용 및 경미사항 신고 면제
(안 제21조 등) ····· 2

Ⅰ.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박정하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2024. 12. 23.

다. 회 부 일: 2024. 12. 24.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매년 3천 건이 넘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신고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게임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처리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등).

Ⅲ. 검토의견

1. 게임물 수정 시 사전신고 허용 및 경미사항 신고 면제 (안 제21조 등)

가. 개정안 요지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여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24시간 내 사후신고 외에도 수정 전 사전신고를 허용하고, 수정 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하되,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소위 '아케이드 게임물')과 게임 결과에 따른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나 제2조제1호의2[1]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소위 '사행성 모사 게임물') 등은 수정신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1조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물

정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제21조제7항에 따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1조제9항----------.
제21조(등급분류) ① ~ ④ (생 략)	제21조(등급분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수정하는----------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후단 삭제> 다만,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기존의 등급분류(게임물내용정보를 포함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⑥ 제5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게임물에 대해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게임기의 외관 변경을 제외한 수정 사항이 있는 게임물 2. 게임 결과에 따른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나, 제2조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신 설>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
⑦·⑧ (생 략)	⑨·⑩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⑨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⑪ ----------제9항----------.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등급분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2. 제2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자체등급분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7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등급표시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다만, 제21조제7항으로 정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2. ~ 12. (생 략) ② ~ ④ (생 략)	----------. 1. 제21조제9항----------. ------제21조제9항----------. 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①·② (생 략) ③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제21조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1조제9항----------.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① 위원회는 제21조제2항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①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3. ~ 6. (생 략) ②·③ (생 략)	----------.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 3.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수수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제21조제5항에 따른 게임물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 재분류 대상인 자 ③ (생 략)	제41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5항 및 제6항---------- 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21조제5항[2]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수정 내용이 이미 분류받은 등급을 변경해야 할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새로 받아야 함.

- 다만, 연도별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신고된 사항 대부분은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고 등급을 재분류해야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함.

[연도별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통계]

(단위: 건)

연도	수정신고 합계	등급유지	재분류	반려	철회
2019년	3,296	3,036	32	107	121
2020년	3,206	2,876	63	129	138
2021년	3,292	3,092	1	115	84
2022년	3,228	3,041	0	101	86
2023년	3,144	2,992	4	111	37

※ 자료: 게임물관리위원회, “2024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2024. 11.

○ 그러나 현행 규정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그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제48조제2항제2의2호), 게임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됨은 물론 행정력의 낭비로도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음.[3)]

- 한편, 신고기한과 관련해서도 현행 규정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만 규정하고 사전신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사업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게임물 수정의 내용이 기존의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할 정도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24시간 내 사후신고 외에도 수정 전 사전신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게임 캐릭터의 일부 변경이나 아이템 종류의 단순 추가와 같이 등급분류와 무관하게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오류·버그 수정 등을 위한 수시 업데이트 등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전신고를 허용함으로써 게임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한편 개정안은 제21조제6항을 통해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 등을 수정신고의무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3) 인벤, "[게임국감] 류호정 의원 "불필요한 게임물 수정신고 없애야"", 2023.10.17. 기사 등 참조

하여 등급분류 이후 개조·변조를 통해 불법 PC방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게임은 신고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내용수정 간소화를 빌미로 불법 개조·변조가 더욱 용이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내용수정 신고의무 완화를 통한 업계 부담 경감 필요성 및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는 게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음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임. **게임산업협회**에서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업계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 내용수정이 불필요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옴.

○ 한편, 수정신고 편의성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 10. 30.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052호)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같이 심사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76